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¹⁾의 효력이 2024년말로 종료되었음.²⁾ 이에 동일한 특례를 신설하고 그 효력을 2027년까지로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
부 칙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2)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고, 다만 예산총칙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목적예비비를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2025년도 예산총칙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6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268,090,000,000 원),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조의2 신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

(단위: 억원)

연도	계 (100%)	국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
2020	13,600	6,460	6,460	680
2021	19,855	9,431	9,431	993
2022	19,254	9,146	9,146	963
2023	19,152	9,097	9,097	958
2024	19,889	9,447	9,447	994
2025	19,692			

- * (2024년까지) 특례에 따른 재원분담: 국가(중액교부) 47.5% + 교육청 47.5% + 일반지자체 5%
- * 2025년 예산의 경우 특례 종료로 인해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
- * 실제 예산은 정산을 고려하여 정함.
- * 자료 : 교육부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24년말 효력이 종료된 특례조항인 현행 제14조³⁾를 삭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
부 칙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교육부 의견

교육부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정부 분담비율을 47.5%로 고정하지 않고, **47.5%이내**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개 정 안	교육부 의견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u>1,000분의 475에</u>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u>1,000분의 475이내에</u>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전문위원 이 은 정)